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당초 상병명 “요부좌상”으로 요양 후 “추간판 탈출증 제 4 ~ 5”가 추가 진단된 경우

(87-11 호 87.2.16. 취소)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화전 1 동

성명 : 전 ○ ○

소속 : ○○광업소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주 문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이 86.10.27.자 “전 ○○”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6.10.27.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후산부로서 86.4.29. 업무상 부상을 입고 상병명 “요부좌상”으로 자혜의원에서 요양하다가 86.6.17.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으로 전원 요양치료 중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상병을 확인하기 위하여 86.8.28 ~ 86.9.1. 까지 한림대학 부속 춘천성심병원

에서 척추강조영술 및 척추전산화 단층촬영의 특진을 실시한 결과 진단명 “요부염좌”로 특이 소견없다는 것으로 86.10.15. 치료종결 하였음. 그러나 청구인은 86.10.14. 한양대학부속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로 재요양 신청을 한 바, 원처분청은 한림대학부속병원 진단서상 “요부염좌”로 특이 소견 없음과 자문의 역시 “특이소견 없음”으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던 바, 산재심사관은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한강성심병원에 감정한 결과 한양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추간판탈출증”的 상병자체가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86.12.23. 자발행 국립의료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제 4~5”가 업무상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 제 4~5”을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6.12.26. 전○○)
2. 원처분청 의견서(87.1.13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6.12.5. 오○○)
4. 업무상 질환여부(의학적) 감정서(86.12. 한강성심병원)
5. 최초요양신청서(86.5.8. 전○○)
6. 재요양 신청서(86.10.20. 전○○)
7. 재요양 불승인 결의서(86.10.27.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8. 진단서(86.12.23. 국립의료원)
9. 진단서(86.10.14. 한양대학부속병원)
10. 건강진단 개인표(84.3.2. 자혜의원)
11. 특진소견서(86.9.1. 춘천성심병원)
12.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

건대,

청구인은 국립의료원에서 진단한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제 4~5”가 업무상 질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이 86.4.29. 업무상 부상을 당한 후 자혜의원에서 최초 진단된 상병명이 “요부좌상”이고 86.6.17.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에 전원하여 같은 상병으로 요양중 원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상병을 확진하기 위하여 86.8.28~86.9.1.까지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에 청구인을 출석시켜 특진을 의뢰하였던 바 소견이 1) 요통 및 양하지 이상감각, 2) 이학적 소견 : 양하지 직거상이 40도(좌), 40도(우)이며 제 2,3,4,5 요추간 압통등의 이상소견이 있음. 3) 겸사소견 : 척추강조영술 및 척추전산화 단층촬영상 특이소견 없음. 4) 향후치료의견 : 요통등에 대한 대중요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고 치료종결 하루전인 86.10.14. 청구인이 한양대학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진단된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를 원처분청에 재요양 신청한 결과 원처분청 자문의가 심사한 소견이 “추간판 탈출증 제 4~5”的 상병명에는 특이이상 없음이라는 소견에 의하여 재요양 신청이 불승인 처분되었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하여 산재심사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상병을 확인하고자 한강성심병원에 감정한 결과 소견이 “현대의학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척수강 조영촬영을 겸한 척수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하여 진단한 것이 최상의방법임”이고 청구인이 86.12.23.자 국립의료원에서 진단한 상병명이 “제 4~5 요추간판 탈출증 (경증)”으로서 요통으로 본원 외래에서 진찰받았으며 특이한 이상은 없으나 요통만이고, 척추 전산화 단층촬영상 경미한 상기증이 의심됨. 물리치료만으로 치료가능한 것임”으로서 이상 위에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요추 제 4~5에 경증의 “추간판탈출증”이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초 업무상 부상을 입은후 추간판 탈출증 제 4~5에 경미한 부상이 있었다고 판단

된다.

그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추간판 탈출증 제 4 ~ 5”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

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한다.

**당초 상병명 “1) 좌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중증) 2) 좌대
퇴 동맥 및 정맥파열 3) 좌종종골 신경손상”으로 요양 중 “외상성
정신증”이 추가 발생한 경우**

(87-170 호 87.7.20. 취소)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기도 화성군 석우리

성명 : 박 ○ ○

소속 : ○○파이프공업(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장

주 문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장이 87.3.19.자 “박 ○○”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7.3.19.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청구인은 ○○파이프공업(주)에서 근무하던 중 85.11.13. 업무상 부상을 입고 상병명 “1) 좌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중증) 2) 좌대퇴동맥 및 정맥파열 3) 좌, 좌종골 신경손상”으로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요양하다가 86.6.30.

까지 약 8개월간 수차에 걸친 수술 후 입원치료하고 86.7.1. ~ 86.11.31. 까지 약 5개월간 통원치료하였으며, 다시 86.12.1. ~ 87.1.31. 까지 2개월간 재가요양이 승인되어 치료중 심한 두통(환각 환청)으로 혼수상태를 혼매다가 실신하여 87.2.13. 성빈센트 신경외과에 입원후 상병명 “외상성 정신증”이 추가로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동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추가 요양신청 상병명 “외상성 정신증”이 최초 재해 당시 다리부위의 상병과 무관하다는 자문의 소견이므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던 바, 산재심사관은 노동부 본부 자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외상성 신경증은 연기사유로 보상성 신경증과 유사한 증상으로 기존상병과 무관하다”는 소견이므로 원처분청이 요양불승인한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추가 진단 상병명 “외상성 정신증”은 당초 부상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요양승인하라는 취지의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상병명 “외상성 정신증”이 85.11.13. 부상에 기인한 것이나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87.5.21. 박○○)
2. 원처분청의견서(87.6. 노동부 수원지방 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결정서(87.5.1. 박○○)
4. 최초 요양신청서(85.11. 박○○)
5. 추가상병 요양결정결의서(87.3.19.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장)
6. 추가상병신청서(87.2.18. 성빈센트병원장)
7. 소견서(85.11. 성빈센트병원장)
8.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이 ○○파이프공업(주)에서 근무 중 85.11.13. 업무상 부상을 입고 상병명 “1) 좌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중증) 2) 좌대퇴동맥 및 정맥파열 3) 좌, 좌종골 신경손상”으로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요양하다가 86.6. 30.까지 약 8개월간 수차에 걸친 수술후 입원 치료하고 86.7.1.~86.11.31.까지 5개월간 통원 치료하였으며 다시 86.12.1.~87.1.31. 까지 2개월간 재가요양이 승인되어 치료중 심한 두통(환각 환청)으로 혼수상태를 헤매다가 실신하여 87.2.3.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상병명 “외상성 정신증”이 진단되었으므로 추가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재해 당시의 다리 부위 상병과 무관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상 이후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 온 성빈센트병원의 신경외과전문의 이○○의 진단소견서를 보면, 상병명이 “외상성 정신증”으로 진단하였고 그 소견은 “87.2.3. 초진을 실시하였음. 당시의 상태는 환청, 자살반추사고, 대인관계거부, 식욕부진, 심한불면 및 피해망상 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증세와 비슷한 양상으로 생각되었음. 그러나 환자의 연령, 증세의 발현 당시의 주의상황 등으로 보아 새로운 정신증세가 별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외상 후의 신체적 불구 및 이로 인한 재활가능성의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의한 정신으로 판단되었음. 현재는 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환청, 자살반추사고, 대인관계거부, 식욕부진, 심한불면 및 피해망상 등의 증상은 외상성 정신증이며, 이와 같은 증상은 청구인이 (1) 대퇴골 이식술 (2) 관절적 정복술 및 자가골 이식술 (3) 동정맥 문합술 (4) 체외급속의 고정술 및 금속판 고정술 등 어려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과 주의상황 등으로 보아 외상 후의 신체적 고통 등 신체적 불구 및 이로 인한 재활가능성의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아지며, 따라서 85.11.13. 외상과 동 “외상성 정신증”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한 요양승인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가 요양신청 상병명 “외상성 정신증”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